

# 가천약학연구원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①이 규정은 본 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 설치된 가천약학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연구원의 역할)** 연구원은 약학대학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약학의 기초 연구,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연구 등 약학 분야 전반의 연구와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약학 분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.

**제3조(연구원의 사업)**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약학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 사업
2. 천연약품, 생물약품, 합성약품의 개발 및 제제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
3.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 사업
4. 약물의 독성 및 신체 면역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업
5. 약물의 제형 및 제제연구를 통한 약물전달 연구 사업
6.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연구 사업
7. 약품 기기분석 및 공동연구기자재의 관리 운영 사업
8.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시설장비의 관리 운영 사업
9.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관리 운영 사업
10. 임상 및 보건사회 약학에 관한 연구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구성)** ①연구원은 산하에 약학연구소, 신약개발연구소, 인프라지원부를 둔다.

②연구원은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③연구원에는 연구소장, 인프라지원부장을 두고,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교수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연구원장 등)** ①연구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약학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5-1-26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②연구소장과 인프라지원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과 약학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한다.

④연구소장과 인프라지원부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, 소관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6조(참여 교수)** ①참여 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로서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한 전공분야 교수를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

②참여 교수의 임기는 연구 개발과제의 사업기간으로 하며, 연구기간 동안의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연구인력 구성)** ①연구원에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·외 전문가를 겸임교원, 외래교수와 연구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그 임용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한다.

③연구원에는 연구와 행정 지원을 위하여 직원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약학연구소)** ①약학연구소에는 기초약학 연구부, 분자약학 연구부, 의약품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, 독성면역학 연구부, 약품제제 연구부, 임상약학 연구부, 보건사회약학 연구부를 둔다.

②약학연구소의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초약학 연구부는 약학 전반에 관한 기초 연구 사항
2. 분자약학 연구부는 천연약품, 생물약품, 합성약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 사항
3. 의약품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는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 사항
4. 독성면역학 연구부는 약물의 독성 및 신체 면역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항
5. 약품제제 연구부는 약물의 제형 및 제제연구를 통한 약물전달 연구 사항
6. 보건사회약학 연구부는 약물보건학 및 약물사회학 연구 사항
7. 임상약학 연구부는 약물의 임상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항

**제9조(신약개발연구소)** ①신약개발연구소에는 분자표적-활성 검색부, 후보물질 개발부, 약리-약동학 연구부, 신약제제 개발부를 둔다.

②신약개발연구소의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분자표적-활성 검색부는 새로운 신약의 표적 발굴 및 검증, 그리고 활성 검색에 관한 연구사항
2. 후보물질 개발부는 저분자물질, 생물학적 의약품 및 기타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에 관한 연구사항
3. 약리-약동학 연구부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약리, 약동학, 독성에 관한 연구 사항
4. 신약제제 개발부는 신약후보물질이 제형 및 제제에 관한 연구 사항

**제10조**(인프라지원부) ①인프라지원부에는 행정실, 중앙기기실, 실험동물실, 산업화 지원실을 둔다.

②인프라지원부의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행정실은 본 연구원 전반의 행정에 대한 운영 사항
2. 산업화지원실은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연구 사항
3. 중앙기기실은 약품 기기분석 및 공동연구기자재의 관리 운영 사항
4. 실험동물실은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시설장비의 관리 운영 사항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

**제11조**(운영위원회) ①연구원에는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며, 약대학장 및 각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12조**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원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
2.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산하 연구소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

5-1-26~4 제5편 부설연구기관

**제13조(자문위원회)** ①연구원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자문위원은 국내·외 관련분야 전문가 및 참여교수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.

③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4조(기타 위원회)** 본 연구원의 약학연구 및 윤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 4 장 교 육

**제15조(연구수행을 위한교육)** 연구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① 실험 안전 교육 (초기, 2년마다 재교육)
- ② 방사선안전교육 (초기, 1년마다 재교육)
- ③ 동물 취급과 실험교육 (초기, 1년마다 반복)
- ④ 연구윤리 교육 (매년)
- ⑤ Internet 사용관련 교육 (매년)
- ⑥ 성희롱 예방 교육 (매년)

## 제 5 장 연구비 및 간접경비 등

**제16조(연구비 및 간접경비)** 교육과학기술부, 보건복지부, 지식경제부, 한국학술진흥재단, 한국과학재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부터 공모에 의해 수혜한 연구비와 이에 준하는 기업, 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국내·외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간접 경비를 납부한다.

**제17조(기부금 및 위탁 연구기금)** 연구원 소속의 교원이 외부로부터 기부금이나 위탁연구 기금을 수혜한 경우 기금은 산학협력단의 별도 관리 하에 해당 교원의 연구에 국한하여 사용한다.

**제18조(핵심 장비 사용료)** 연구자가 핵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책정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한다.

## 제 6 장 상 별

**제19조(상별)** ①연구원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를 매년 표창한다.

②연구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
③징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7 장 연구교원의 소외활동

**제20조**(연구교원의 소외활동) 연구교원의 외부활동은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8 장 재 정

**제21조**(재정) 연구원의 재정은 기금, 본교와 병원 및 재단의 지원금, 외부기관의 찬조금과 기부금, 연구사업 수익, 기타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22조**(회계 연도)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23조**(예산 및 결산) 연구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4조**(감사) 연구원의 수입·지출에 대한 감사는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25조**(보고) 연구원장은 연구비 수혜 및 연구 활동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9 장 규정개정 및 준용

**제26조**(규정개정 등) 연구원의 규정 개정, 해산 및 기타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7조**(운영지침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8조**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'가천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'에 따라 처리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